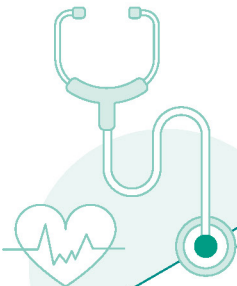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길잡이



선발전형 및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목 차



지역의사제 및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모아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원자격, 진료권·광역권, 전형 방법, 의무복무 등 주제별로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수시 지원과 관련된 선발 대상·지원자격 부분을 담았습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추후 시행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 외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mohw.go.kr)** 정책 > 국민 삶을 바꾼 정책 10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강화 > 정책자료

 **교육부(moe.go.kr)** 정책 > 대학(원)교육

주제별 구성 총85문항



- | | |
|--------------------|-----------------|
| 01 제도 개요 7문 | 09 의무복무와 수련 19문 |
| 02 선발 대상·규모 6문 | 10 지원금 반환·제재 5문 |
| 03 진료권과 광역권 10문 | 11 기타 4문 |
| 04 지원자격 11문 | |
| 05 전형 방법·지원 절차 10문 | |
| 06 지역인재전형과의 관계 3문 | |
| 07 특수 사례 5문 | |
| 08 교육·학비 지원 5문 | |

질문 한눈에 보기

01 제도 개요

1. 지역 의사제(지역 의사선발전형)란 무엇이며,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2. 지역 의사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인가요?
4. 선발부터 정착까지 어떤 흐름으로 운영되나요?
5.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일반 의대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6. '복무형 지역 의사'와 '계약형 지역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7. 지역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로 성장하게 되나요?

02 선발 대상·규모

8. 어느 대학에서 지역 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며, 왜 서울 소재 의대는 제외되었나요?
9. 2027학년도에 전국에서 총 몇 명 뽑나요? 이후에는요?
10.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확한 선발인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1. 대학마다 뽑는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정해지나요?
12. 2030년에 지역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지역 의사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1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N수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03 진료권과 광역권

14. '진료권'과 '광역권'이 각각 무슨 뜻인가요?
15. 우리 시·군·구는 어느 진료권/광역권에 속하나요?
16. '중학교 광역권, 고등학교 진료권 또는 광역권'이 무슨 뜻인가요?
17. 나는 진료권 선발과 광역권 선발 중 어디에 지원할 수 있나요? 동시 지원도 가능한가요?
18. 진료권 선발이 광역권 선발보다 유리한가요? 경쟁률 차이가 있나요?
19. 지역 의사선발전형은 왜 진료권 70%, 광역권 30%로 나누어 선발하나요?
20.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예: 대전)에서 하게 되나요?
21.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할 진료권이 지정되나요, 제가 고르나요?
22.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나요? 어떤 요건으로 지원하나요?
23. 경기·인천은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요건을 사·도로 보지 않고 진료권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04 지원자격

- 24.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25. 초등학교 소재지도 보나요?
- 26. 대학 소재지와 나의 출신 학교 지역이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 27. 내가 재학 또는 졸업한 중·고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8. '거주 요건'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며, 실거주까지 확인하나요?
- 29. 거주 요건은 무슨 서류로 증명하나요?
- 30. 부모님 거주지도 요건에 해당하나요?
- 31. 고등학교 졸업 후(또는 재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겨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 32. 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 33. 부모의 직장 이동, 해외체류 등 불가피하거나 개별적인 사유로 타지역 전학·이사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나요?
- 34. 학교 배정구역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어 거주지와 학교 소재 진료권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5 전형 방법·지원 절차

- 35.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로만 뽑나요, 정시도 있나요?
- 36. 2027학년도 수시·정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37.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같은 대학 다른 전형(일반전형 등)을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나요?
- 38. 대학별 선발 방법(교과/학생부종합/논술 등)과 수능최저·내신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 39. 면접이 있나요? 지원동기·복무 의지를 별도로 평가하나요?
- 40.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학교 소재지·거주 등)는 무엇인가요?
- 41. 자격요건은 언제(원서접수일·졸업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42.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 43.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44. 미달·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채우나요? 편입학으로도 지역의사가 될 수 있나요?

06 지역인재전형과의 관계

- 45. 기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46.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하면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 47. 두 전형을 동시에(또는 각각)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지역인재전형을 대체하나요?

질문 한눈에 보기

07 특수 사례

- 48.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요?
- 49. 조기졸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50. 영재학교·국제중·자사고·특목고 등 출신도 지원 가능한가요?
- 51. 재외국민·외국 소재 학교를 다닌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52. 질병·장애 등으로 학업 중단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08 교육·학비 지원

- 53. 학비를 어떤 항목까지,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확정되었나요?
- 54. 학비 등 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나요?
- 55.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 56. 휴학·유급·정학·전과를 하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57.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09 의무복무와 수련

- 58.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반드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나요?
- 59. 의무복무지역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60.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에 쉬면 그만큼 늘어나나요?
- 61. 의무복무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무기관을 정해주나요?
- 62. 지역의사로 근무하면 급여가 일반 의사보다 적은가요?
- 63.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은 어디서 하나요? 원하는 과 병원을 고를 수 있나요?
- 64.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 65. 군 복무나 출산은 의무복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66. 의무복무 중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67. 전문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앞으로 선택 범위나 인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 68. 광역권(예: 강원)으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 전체에서 임의 배치되나요, 본인이 선택하나요?
- 69.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병원이 없거나 희망하는 과목의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70. 의무복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71. 의무복무지역의 '변경'과 '별도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72. 선발 당시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이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변경될 수 있나요?
- 73.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의무복무를 할 수 있나요?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복무해도 되나요?



- 74. 진료권(의무복무지역)에 수련병원이 없으면 전문의가 못 되거나 수련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 75. 복무 중 본인이 이행해야 할 신고·보고 의무가 있나요?
- 76.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나요?

10 지원금 반환·제재

- 77.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자퇴·제적) 지원받은 돈을 어떻게 반환하나요?
- 78. 학비 전액과 이자를 갚으면 의무복무 없이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79.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 합격하면요?
- 80.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81. 사망·중증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도 반환해야 하나요?

11 기 타

- 82. 지역 의사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 83. 지역 의사선발전형은 성적이 낮아도 쉽게 붙는 전형인가요?
- 84. 10년 동안 묶이는 거면 손해 아닌가요?
- 85. 학비 지원 금액, 의무복무기관·수련병원 목록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언제 안내되나요?

01 제도 개요



Q
1

지역의사제(지역의사선발전형)란 무엇이며,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해 교육·수련·복무·정착을 지역에서 이어가도록,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지역인재전형(거주·출신요건만 두고 의무복무·학비지원 없음)이나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달리, 선발-교육-수련-복무-정착 전주기를 연계해 지원·관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A

☞ 근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의사법, 2025.12.23. 공포, 2026.2.24. 시행) 및 하위법령

Q
2

지역의사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입학 단계부터 선발·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A

☞ 근거 | 지역의사법 제1조(목적)

Q
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에서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합니다. 2027학년도는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선발합니다.

A

☞ 근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26.2.10.)

Q
4

선발부터 정착까지 어떤 흐름으로 운영되나요?

① 선발 → ② 교육·학비 지원 → ③ 수련·의무복무 → ④ 경력·정착 지원 → ⑤ 반환·복무관리의 5단계로 운영됩니다.

선발	교육·지원	복무·수련	경력·정착 지원	관리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내 복무·수련	지역의사지원센터 지속 지원	복무 불이행 시 반환· 복무상황 보고 등 관리

근거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A

Q
5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일반 의대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위와 교육과정은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 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전형과 다릅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5~7조

A

Q
6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재학 중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계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7년 이내(협의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근무하며 지원받는 유형이 ‘계약형 지역의사’입니다. 본 선발전형은 복무형에 해당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2조·제10조, 시행령 제9조

A

Q
7

지역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로 성장하게 되나요?

지역의사는 지역에 밀착한 일차의료부터 지역거점 병원의 응급·중증의료까지, 지역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의사로 성장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무복무지역 소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수련·연수와 진로·경력 개발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지원하며,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라 미래 지역医료를 이끄는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

02

선발 대상·규모



Q
8

어느 대학에서 지역 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며,
왜 서울 소재 의대는 제외되었나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신설·운영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는 제외되었습니다.

A

Q
9

2027학년도에 전국에서 총 몇 명 뽑나요? 이후에는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합니다.

A

Q
10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확한 선발인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진료권별 세부 인원은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Q
11

대학마다 뽑는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학별 선발인원은 해당 대학의 '2024학년도 대비 정원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 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이하 '선발고시')는 대학별 선발인원과 각 대학의 지역별 선발인원을 정하기 위한 산식과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A

근거 | 선발고시 제3조

Q
12

**2030년에 지역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지역의사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30년에 신설 예정인 지역의대의 선발인원 산정방식은 설립 지역 및 대학 정원이 확정된 이후 검토할 예정이며, 개교 시점에 맞추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A

Q
1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N수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예. 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재수·삼수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A

03

진료권과 광역권

Q
14

‘진료권’과 ‘광역권’이 각각 무슨 뜻인가요?

진료권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묶음, 광역권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선발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지역범위를 의미합니다.

📖 근거 | 시행령 별표2 제2호

A

Q
15

우리 시·군·구는 어느 진료권/광역권에 속하나요?

시·군·구별 진료권 및 광역권 구분은 「지역의사법 시행령」 별표와 선발고시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에도 개별 지역명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근거 | 시행령·선발고시 별표

A

Q
16

‘중학교 광역권, 고등학교 진료권 또는 광역권’이 무슨 뜻인가요?

지원하려는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시·도의 묶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인천은 광역권 선발이 없으므로 중학교부터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해야 하며, 재학 중 일부라도 요건 지역을 벗어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Q
17

**나는 진료권 선발과 광역권 선발 중 어디에 지원할 수 있나요?
동시 지원도 가능한가요?**

중·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및 일반전형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A

Q
18

진료권 선발이 광역권 선발보다 유리한가요? 경쟁률 차이가 있나요?

진료권과 광역권 간 경쟁률 또는 유불리는 전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 대학 모집요강과 선발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Q
19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왜
진료권 70%, 광역권 30%로 나누어 선발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의 약 70%는 진료권별로, 약 30%는 광역권별로 선발합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진료권 중심으로 선발하되, 지역학생의 지원 기회를 확보하고 진료권 경계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는 광역권 단위로 선발합니다.

 근거 | 선발고시 제4조·별표

A

Q
20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예: 대전)에서 하게 되나요?

‘광역권’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예: 대전·세종·충남·충북과 같은 시·도 단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근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권 선발 학생의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과대학이 선발하는 도(道)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대전·부산과 같은 광역시 자체는 근무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의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의무복무지역이 아니므로 그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 시행령 별표2

A

Q
21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할 진료권이 지정되나요, 제가 고르나요?

본인이 선택합니다. 광역권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선발하는 권역 내 진료권 중에서 원하는 한 곳을 본인이 고르는 방식이며, 국가나 대학이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A

Q
22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나요? 어떤 요건으로 지원하나요?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 없이 진료권 단위로만 선발하며, 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 시행령 별표2

A

Q
23

경기·인천은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요건을 시·도로 보지 않고 진료권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인천은 수도권이므로, 제도의 취지(의료취약지 연고 인재 양성)를 고려할 때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서·의료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한정해 선발하며, 이에 맞춰 중학교 요건도 광역권이 아닌 진료권 단위로 적용합니다.

A

04

지원자격



Q
24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됩니다. 두 학교가 같은 진료권/광역권 체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진료권 선발·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중학교 소재지 광역권 안에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이수 경로	진료권 선발 지원	광역권 선발 지원
하나의 진료권 내 한 시·군·구에서 입학~졸업 전 과정 이수	가능 ✓	가능 ✓
같은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 (진료권 내 이동)	가능 ✓	가능 ✓
같은 시·도(市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불가 ✕	가능 ✓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시·도(市道)로 전학	불가 ✕	가능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불가 ✕	불가 ✕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진료권 요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진료권 내에서 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그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진료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A

📖 근거 | 시행령 별표1·2

Q
25

초등학교 소재지도 보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소재지는 요건이 아니며,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 및 재학기간 거주 요건만 적용됩니다. 단, 중학교 '입학'부터 요건이 적용됩니다.

A

📖 근거 | 지역의사법 제4조

Q
26

대학 소재지와 나의 출신 학교 지역이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진료권/광역권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대학과 동일 시·군·구일 필요는 없고, 대학이 속한 진료권/광역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A

Q
27

내가 재학 또는 졸업한 중·고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별표1·2 및 선발고시의 진료권·광역권 구분과 각 대학 모집요강,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의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별표1·2,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A

Q
28

‘거주 요건’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며, 실거주까지 확인하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선발유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개별 시·군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중학교·고등학교의 소재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사실은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A

Q
29

거주 요건은 무슨 서류로 증명하나요?

거주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기숙사 거주 등)에는 대학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Q
30

부모님 거주지도 요건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거주지는 지원 요건이 아니며, 학생 본인의 재학기간 거주가 기준입니다.

A

Q
31

**고등학교 졸업 후(또는 재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겨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자격요건은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 자체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

A

Q
32

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에 있더라도 해당 선발유형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속한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전학 등의 시점 차이로 서로 다른 기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A

Q
33

**부모의 직장 이동, 해외체류 등 불가피하거나 개별적인 사유로
타지역 전학·이사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나요?**

부모의 직장 이동, 해외체류 등 개인적·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타지역 전학·이사에 대해서는 학교 소재지·거주 요건의 완화나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A

Q
34

**학교 배정구역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어
거주지와 학교 소재 진료권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권·광역권은 교육청 학교군과 별개로 시·군·구 및 시·도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거주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교육청 학교군(공동학군·평준화 등)과 진료권 구분이 서로 달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학생이 경계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법 시행령」 별표2의 근거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선발고시

A

05

전형 방법·지원 절차

Q
35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로만 뽑나요, 정시도 있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정시 등 모집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대학의 장에게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선발여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A

Q
36

2027학년도 수시·정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 수시 원서접수 2026.9.7(월)~11(금) 중 3일 이상, 합격자 발표 ~12.18(금), 등록 12.21(월)~23(수).
- ▲ 수능 2026.11.19.(목).
- ▲ 정시 모집요강 발표 2026.9.1., 원서접수 2027.1.4~7 중 3일 이상, 합격자 발표 ~2.5(금).

A

📖 근거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Q
37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같은 대학 다른 전형(일반전형 등)을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나요?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복수지원 금지·이중등록 금지 및 수시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Q
38

대학별 선발 방법(교과/학생부종합/논술 등)과 수능최저·내신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등) 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모두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다만 시행령상 각 대학은 지역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지역 정주 의지 등 제도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

📖 근거 | 시행령 제3조제3항

Q
39

면접이 있나요? 지원동기·복무 의지를 별도로 평가하나요?

면접 실시 여부·평가요소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근거 | 시행령 제3조제3항

A

Q
40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학교 소재지·거주 등)는 무엇인가요?

학교 소재지·거주 요건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학교장 확인 등)는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제출서류는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Q
41

자격요건은 언제(원서접수일·졸업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역의사법 제4조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지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졸업일까지로 판단합니다.

A

Q
42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A

Q
43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대학은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미달된 지역별 인원을 다음다음 연도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인원은 해당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 시행령 제3조제1항

A

Q
44

**미달·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채우나요?
편입학으로도 지역의사가 될 수 있나요?**

제적·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학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과 동일한 자격요건(중·고교 소재지·거주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편입학으로 들어온 학생도 당초 선발된 학생과 똑같이 학비 지원과 10년 의무복무 등 법에 따른 의무·지원이 적용됩니다.

A

 근거 | 시행령 제3조제2항

06**지역인재전형과의 관계****Q****45**

기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거주·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입학전형으로 학비지원·의무복무 조건이 없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학비 지원과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가 결합된 별도의 전형입니다.

A**Q****46**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하면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에게는 의무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복무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A**Q****47**두 전형을 동시에(또는 각각)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지역인재전형을 대체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별개로 병존합니다. 동시·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A

07

특수 사례

Q
48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 거주 증빙이 어려워 지역연고 기반 타 전형과 마찬가지로 미포함)

📖 근거 | 법 제4조제2항

A

Q
49

조기졸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졸업자 역시 동일하게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하고, 그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개별 지원자의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해당 대학이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A

Q
50

영재학교·국제중·자사고·특목고 등 출신도 지원 가능한가요?

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의 명칭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학교가 시행령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와 학교 소재지·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재학교(영재교육진흥법)나 국제중·국제학교(특별법) 등 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근거 | 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A

Q
51

재외국민·외국 소재 학교를 다닌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재학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법 제4조제2항

A

Q
52

질병·장애 등으로 학업 중단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이력이 재학기간 전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세부 기준은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A

08

교육·학비 지원

Q
53

학비를 어떤 항목까지,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확정되었나요?

정규 교육과정의 등록금 실비(입학금·수업료)와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주거비)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고 각 대학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5조, 지원고시 제3조

A

Q
54

학비 등 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나요?

학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지급은 대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학의 장이 학생 명단·산출 내역을 첨부해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학기별로 신청하면(1학기분 2월 14일·2학기분 8월 14일까지), 시·도지사가 확인 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이 등록금·기숙사비 등 대학 납부분을 먼저 대납한 뒤 남은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5조, 지원고시

A

Q
55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

A

Q
56**휴학·유급·정학·전과를 하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사에 대한 학비 지원은 정해진 수업연한의 학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학기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유급·정학·전과 등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사유별 중단 기간·재개 시점 상이). 휴학·유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및 반환 절차는 시행지침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

A**Q**
57**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대학 학칙에 따라 공공의료 관련 과정·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연구(KAMC)」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각 대학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배포·권고할 예정입니다.

 근거 | 시행령

A

09

의무복무와 수련



Q

58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반드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나요?

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는 해당 지역 내 의무복무기관에서 수행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

A

Q

59

의무복무지역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이를 함께 공고합니다. 진료권 선발로 입학한 경우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광역권 선발로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이 모집하는 도 지역의 진료권 중 희망하는 진료권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권 선발자는 의무복무기간 중 같은 도 지역의 다른 진료권으로 옮겨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근무상황 변경에 따른 자료제출 필요).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2항

A

Q

60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에 쉬면 그만큼 늘어나나요?

의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 수로 계산합니다.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산입되지 않으며(연차·공휴일 등은 근무일에 포함),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의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만큼 실제 복무 완료 시점이 순연됩니다.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는 합산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의무복무 고시

A

Q
61

의무복무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무기관을 정해주나요?

정부가 지역의사를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의료인력 수요와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목록을 매년 공표할 예정(최초 공표 '29.12.31.까지)입니다.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공표된 의무복무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하고, 해당 근무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무복무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의무복무기관 정보 제공, 진로상담 및 취업·경력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3항, 의무복무 고시 제2조

A

Q
62

지역의사로 근무하면 급여가 일반 의사보다 적은가요?

지역의사의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체계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와 권익보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A

Q
63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은 어디서 하나요? 원하는 과·병원을 고를 수 있나요?

현재 26개 전문과목 중 희망하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절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소재한 수련병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 밖의 수련병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3조, 의무복무 고시

A

Q
64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수련을 위해 별도로 지정받은 지역 포함)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9개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가, 그 외 전문과목과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의무복무지역을 벗어나 수련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4항, 의무복무 고시

A

Q
65**군 복무나 출산은 의무복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여성 지역의사의 경우 출산 시 3개월 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4항, 시행규칙

A

Q
66**의무복무 중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 지역의사는 출산에 따른 3개월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어서 이행하게 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A

Q
67**전문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앞으로 선택 범위나 인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현재는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전문과목이나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되는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되며, 이미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8조, 의무복무 고시

A

Q
68**광역권(예: 강원)으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 전체에서 임의 배치되나요, 본인이 선택하나요?**

광역권 선발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모집하는 도(道) 지역의 진료권 중 희망하는 진료권을 선택하여 근무하고, 그 진료권 내 공표된 의무복무기관 가운데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하게 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같은 도 지역의 다른 진료권으로 옮겨 근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 변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Q
69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병원이 없거나 희망하는 과목의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련기간을 의무복무로 인정(산입)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진료권) 내 수련병원에서 수련해야 함에도, 해당 진료권 내 수련병원이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수련과목을 수련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의 귀책 없이 지역 내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개 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 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에 한하여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 의무복무 고시

A

Q
70

의무복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현재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중대한 질병·상해가 발생하여 현재 지역에서 치료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사유의 불가피성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제9조, 의무복무 고시 제6조·제8조

A

Q
71

의무복무지역의 '변경'과 '별도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의무복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반면 '별도 지정'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특정 전문과목 수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재난·의료인력 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을 위한 별도 지정은 수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련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종전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A

Q
72

선발 당시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이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변경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기관이 부재하거나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역에 더해 특정 지역을 추가(A→A+B)하는 것으로, 복무지역 자체를 영구히 변경(A→B)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별도 지정은 기존 지역(A)에 근무 가능 지역(B)을 '추가(A→A+B)'하는 것일 뿐, 반드시 별도 지정된 지역으로 옮겨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지역에서 복무할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A

Q
73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의무복무를 할 수 있나요?
전문의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복무해도 되나요?**

예. 전문의 자격 취득은 의무가 아니며, 일반의로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7조

A

Q
74

**진료권(의무복무지역)에 수련병원이 없으면
전문의가 못 되거나 수련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의무복무지역에 수련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 자격 취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 밖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의로 분야(9개 과목,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수련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을 신청하여 수련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권 내 수련 여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수련을 제공하는 '다기관 협력수련' 등으로 수련 기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 근거 | 의무복무 고시 제7조

A

Q
75

복무 중 본인이 이행해야 할 신고·보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시작, 병역·수련·휴직, 30일 이상 요양·입원, 의무복무기관 변경, 면허 정지·취소 등 복무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면허정지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A

Q
76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나요?**

네. 의무복무를 완료하면 의무복무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지역 제한 없이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와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지역의사법 제12조

A

10**지원금 반환·제재****Q**
77**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자퇴·제적) 지원받은 돈을 어떻게 반환하나요?**

재학 중 제적·자퇴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법정이자(연 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제2항

A**Q**
78**학비 전액과 이자를 갚으면 의무복무 없이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비와 이자를 반환한다고 해서 법에 따른 의무복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의무복무 규정이 적용되며, 학비 반환만으로 이를 선택적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

A**Q**
79**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 합격하면요?**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후 합격하면 납부한 반환금을 환급하고 의무복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제2·3항

A

Q
80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복무지역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16·17조, 시행규칙 제9·10조

A

Q
81

사망·중증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도 반환해야 하나요?

사망,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등록, 그 밖에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감면합니다. 의무복무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 개월수에 비례(이행 개월수÷120)하여 감면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6조제4·5항, 시행령 제7조

A

11 기 타



Q
82

지역의사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와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경력개발, 직무교육·연수, 주거 안정, 권익보호·상담, 진로상담·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중앙지원센터는 권역지원센터 업무의 총괄·조정과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권역지원센터는 지역의사와 학생에 대한 현장 지원을 수행합니다.

근거 | 지역의사법 제14조, 지원고시 제12·13조

A

Q
83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성적이 낮아도 쉽게 붙는 전형인가요?

지역의사선발전형도 다른 의대생과 동일하게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발방법과 합격 성적, 경쟁률은 대학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A

Q
84

10년 동안 묶이는 거면 손해 아닌가요?

10년의 의무복무는 진로와 근무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원 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는 재학 중 학비 등이 지원되며, 지역의사가 된 이후에도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연수 등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의 진로계획과 의무복무 조건, 지원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A

Q
85

학비 지원 금액, 의무복무기관·수련병원 목록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언제 안내되나요?

학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세부 운영절차 등은 확정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시행지침 및 대학 안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기관 목록 등 실제 의무복무 시점에 필요한 사항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별도로 공표됩니다. 지원자격과 선발방법 등 입시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붙임 2027 · 2028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별 진료권·광역권 배분 인원

① 대전, 충남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광역	계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광역	계
건양대	1	1	1	1	1		1	6	2	1	1	1	1		2	8
단국대	3	1	3	2	2		4	15	4	1	3	2	2		6	18
순천향대	4	1	3	2	2		6	18	5	1	4	3	3		7	23
울지대	1	1	1	1	1		1	6	2	1	1	1	1		2	8
충남대	6	2	5	3	3		8	27	7	2	6	4	4		10	33
소계	15	6	13	9	9		20	72	20	6	15	11	11		27	90
② 충북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광역	계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광역	계
건국대	3	1	1				2	7	4	1	1				3	9
충북대	19	6	2				12	39	24	7	3				15	49
소계	22	7	3				14	46	28	8	4				18	58
③ 광주, 전남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광역	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광역	계
전남대	6	2	7	3	2	2	9	31	7	2	9	3	3	2	12	38
조선대	4	1	4	2	1	1	6	19	5	1	6	2	2	1	7	24
소계	10	3	11	5	3	3	15	50	12	3	15	5	5	3	19	62
④ 전북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		광역	계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		광역	계
원광대	7	1	1	2	1		5	17	9	1	1	2	2		6	21
전북대	9	1	1	2	2		6	21	11	2	2	2	2		8	27
소계	16	2	2	4	3		11	38	20	3	3	4	4		14	48
⑤ 대구, 경북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	광역	계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	광역	계
경북대	4	5	2	5	1	1	8	26	5	6	2	7	2	1	10	33
계명대	2	3	1	3	1	1	4	15	3	3	1	4	1	1	6	19
대구가톨릭대	2	2	1	2	1	1	4	13	2	3	1	3	1	1	5	16
동국대	1	1	1	1	1	0	0	5	1	1	1	1	1	1	0	6
영남대	2	2	1	2	1	1	4	13	2	3	1	3	1	1	5	16
소계	11	13	6	13	5	4	20	72	13	16	6	18	6	5	26	90

⑥ 부산, 울산, 경남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광역시	계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광역시	계		
경상국립대	5	3	2	5	1		6	22	7	4	2	6	1		8	28		
고신대	1	1	1	1	1		2	7	2	1	1	2	1		2	9		
동아대	4	2	1	4	1		5	17	5	3	2	4	1		6	21		
부산대	7	4	3	7	1		9	31	9	5	3	8	1		12	38		
울산대	1	1	1	1	1		0	5	1	1	1	1	1		1	6		
인제대	4	2	1	3	1		4	15	5	2	1	4	1		6	19		
소계	22	13	9	21	6		26	97	29	16	10	25	6		35	121		
⑦ 강원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강릉권	동해권	속초권	광역시	계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강릉권	동해권	속초권	광역시	계		
가톨릭관동대	1	1	1	1	1	1	0	6	1	1	1	1	1	1	2	8		
강원대	8	7	2	4	3	3	12	39	10	9	2	5	4	4	15	49		
연세대	2	2	1	1	1	1	3	11	3	3	1	1	1	1	4	14		
한림대	1	1	1	1	1	1	1	7	1	1	1	1	1	1	2	8		
소계	12	11	5	7	6	6	16	63	15	14	5	8	7	7	23	79		
⑧ 제주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제주권	서귀포권					광역시	계	제주권	서귀포권					광역시	계		
제주대	11	8					9	28	14	10					11	35		
소계	11	8					9	28	14	10					11	35		
⑨ 경기 · 인천																		
대학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인천 중부권	광역시	계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인천 중부권	광역시	계		
가천대	1	2	1	1	1	1	-	7	2	2	1	2	1	1	-	9		
성균관대	1	1	0	1	0	0	-	3	1	1	1	1	0	0	-	4		
아주대	1	1	1	1	1	1	-	6	1	2	1	1	1	1	-	7		
인하대	1	1	1	1	1	1	-	6	1	2	1	1	1	1	-	7		
차의과학대	0	1	0	1	0	0	-	2	1	1	0	1	0	0	-	3		
소계	4	6	3	5	3	3	-	24	6	8	4	6	3	3	-	30		
총 계	진료권 359 + 광역권 131								490	진료권 440 + 광역권 173								613

문의 및 확인



-  각 대학 2027학년도 모집요강 지원자격·전형방법·선발인원 등 대학별 세부사항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보건복지부·교육부 누리집 게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누리집 안내



-  보건복지부(mohw.go.kr) 정책 > 국민 삶을 바꾼 정책 10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강화 > 정책자료
-  교육부(moe.go.kr) 정책 > 대학(원)교육

| 안 내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용이며, 구체적인 지원자격·전형방법 등은 각 대학 모집요강과 관련 법령·고시가 우선합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길잡이

선발전형 및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